

# 전통가옥의 보존 (傳統家屋의 保存)

申 永 勳  
(文化財專門委員)

## 1.

1980년대의 경향각지(京鄕各地)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살림집을 조사하여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발의(發議)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견들의 일치가 있었다.

이 일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맡았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가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文化財) 2과(課)에서 주도하였다.

이 토의는 무엇을 조사하고 어느 시기까지의 것을 조사하느냐로 집약되었다. 이 시대 지상(地上)에 조영(造營)되는 모든 건축물(建築物)을 다 한옥(韓屋)이라고 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엇을 조사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대건축(現代建築), 또는 양옥(洋屋)이라 속칭(俗稱)되는 건축물들이 있어 한옥과는 스스로 구분(區分)하려는 추세(趨勢)가 있다. 이런 흐름을 두고 한옥(韓屋)과 비한옥(非韓屋)과의 분별(分別)이 생긴다.

한옥(韓屋)이라는 낱말의 개념(概念)은 궁실(宮室), 사원(寺院), 공해관방(公廩關防), 학교(學校), 토목(土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조사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살림집만으로 요령 있게 국한시키기 위하여는, 양옥(洋屋)까지를 고려하여 전통가옥(傳統家屋)이란 가칭(假稱)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조(朝鮮朝)까지 수 천년 이 땅 위에 조형되었던 목조의 건축물, 그 중에 살림집을 전통가옥이란 개념으로 규정짓자는 것이었다. 이 논의가 채택되어 이번 조사를 전통가옥조사(傳統家屋調査)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들 집이 마을에 있으므로 취락(聚落)과 집을 함께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전국취락(全國聚落) 및 전통가옥조사(傳統家屋調査)』라 하였다.

전통가옥(傳統家屋)의 개념이 이렇게 설정됨에 따라 저절로 그 시기도 한정되었다. 1910년 을 전후한 시기에 창건(創建)된 것까지만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조사대상이 분명해졌다. 하한(下限)의 시기까지도 정하여졌으므로 이들을 조사할 표(表)를 만들기로 하였다. 유문룡전문위원(兪門龍專門委員)(지금은 그 직업이 달라졌음)이 초안(草案)을 잡았다. 실무진(實務陳)의 몇 사람이 검토하고 보충(補充)하여 조사표를 확정지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다음의 토의과제이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마을과 집을 짧은 시일내에 파악하려면 충분한 인력(人力)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건축사학계(建築史學界)

의 능력이 그런 인력(人力)을 배양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 전문가(專門家)에 의한 조사는 당장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므로 누구네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누구 집이 가장 크다는지, 고을의 부잣집이 어디의 누구네 집이니 지목하기 쉽다는 상식선(常識線)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성(價値性)을 부여하기로 하고 마을의 유식자(有識者)에게 의뢰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함이 오히려 방안이 될 수 있다고들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의 주무(主務)를 각 시도(市道)의 문화재과(文化財課)(지금은 폐과(廢科)되고 그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文化公報擔當官室)에 이관됨)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시군(市郡)의 공보실장(公報室長)으로 하여금 실제 조사를 진두지휘 한다는 체계를 세웠다.

문화재과(文化財二課)에서는 문화재과장(文化財課長)을 소집하였다. 학예담당자(學藝擔當者)들도 동석(同席)하는 회의가 문화재관리국강당(文化財管理局講堂)에서 일일간(一日間) 열렸다. 정기영이과장(鄭基永二課長)이 회의를 주재하고 신영훈전문위원(申榮勳專門委員)이 조사표 작성의 까닭과 조사표가 요구하는 내용, 조사자들이 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조사대상(對象)의 선별문제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곤 인쇄된 조사표들을 수백매씩 배부하였다.

이 조사표의 작성(作成) 주안점(主眼點)은 조사자들이 비전문가(非專門家)라는 점에 두었다. 그래서 조사표 표지(表紙)에 조사기준과 조사자가 기재(記載)할 요령을 적기(摘記)하기로 하였다.

#### ◎ 전통가옥(傳統家屋)(민가(民家))의 조사기준(調查基準)

○ 1910년 전후(前後)한 시기(時期)에 세워진 집(철근 콘크리트 구조물(構造物)은 제외(除外))

○ 마을에서 오래된 집(부분적(部分的)인 개조(改造)가 있어도 무방)

○ 이런 집들이 이루고 있는 마을, 또는 마을의 일부분(一部分), 재래식(在來式)의 골목과 옛모습을 지니고 있는 동리(洞里)

○ 한 울타리 안에 일부(一部)는 개량(改良)되었어도 나머지가 재래식(在來式)의 모습인 것(부엌, 장독대, 우물, 지붕등이 개조(改造)되었어도 무방).

○ 원래(元來)는 큰집이었으나 이제 다 헐어지고 한 채나 두 채만 남아 있는 집 또는 가묘(家廟)나 사당(祠堂)채.

○ 마을에서 쓰는 공공건물(公共建物)(정자(亭子))이나 통과(通過)의례(儀禮)에 따라 세운 집 또는 성황당(城隍堂), 상여(喪輿)막, 원두막.

#### ◎ 조사자(調查者) 기재(記載) 요령(要領)

○ 위 기준(基準)의 해당(該當)하는 집의 모양(模樣)에 따라 범례(凡例)의 분류(分類)된 방법(方法)으로 해당란(該當欄)에 기입(記入)한다.

○ 집의 간수(間數)는 마을에서 부르는 통칭에 따르며 가급적(可及的) 건평(建坪)의 규모를 기록한다.

○ 집의 여러 채 건물(建物)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位置)를 그려 넣는다.

○ 사진(寫眞)은 확실하게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찍어야 한다.

표지(表紙)에는 따로 조사일자(調査日字)와 조사장소(調査場所), 조사자(調査者)를 기록하는 란(欄)을 큼직하게 만들고 분류번호(分類番號)를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

약간의 주의(注意)가 부족하여도 조사된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과 조사자 자기 이름을 기명(記名)하므로 해서 책임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이었다.

표지(表紙)를 넘기면 이혈(二頁)은 마을과 집의 전체적인 개황(概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항목들을 차례로 나열하였다. 먼저 동리(洞里)의 이름(행정명칭(行政名稱) 자연부락(自然部落)의 명칭등)을 쓰고 마을에 있는 총호수(總戶數)를 기입하고 그들이 민가(民家)인지 초가(草家)인지 기타(其他)에 속하는 집인지를 나누어 기록하였다.

기타(其他)에 속하는 집은 좀 복잡하리라는 예측이 있어 따로 설명하였다. 함석집, 스테이트집, 양개와(洋蓋瓦)집, 판석(板石), 너와집들과 두 가지가 함께 있던지 두가지 종류 이상이 혼재하면 기타란에 기입하게 하였다.

이들의 집들이 건축된 연대로 보아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지를 수록하게 하기 위하여 70년 내외(年内外)된 집, 100년내외(年内外)된 집, 200년내외(年内外)된 집, 연대미상(年代未詳)의 집으로 나누어 해당란에 기입하게 하였다. 그 마을에 오래된 것인지, 이제 신흥(新興)하는 고장인지를 이 표만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게 의도하였다. 그들 집의 지붕형태가 초가, 기와, 기타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서 마을의 현황(現況)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란(欄)엔 「마을의 성격(性格)」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마을의 좌향(坐向), 성씨(姓氏)의 분포(分布), 우물과 샘의 유무(有無), 시내가 흐르는지, 정자, 연못이 있는지, 상여막, 수레막, 원두막이 있는지의 여부와 고적로거수(古蹟老巨樹), 옛돌다리가 있는가도 물었다.

이어서 「마을의 유래(由來)」를 기술하게 하였다. 마을의 유래는 마을이 처음 시작된 시기, 전설과 옛고을과의 관계, 그 고을의 이름, 기타 특기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또 읍지(邑誌)나 문헌(文獻)에 기록된 사항이 있다면 적기(摘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행정구역(行政區域)이 바뀌기도 하므로 옛날의 군현(郡縣)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처음 찾아가는 사람이 목표를 삼고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도시(都市)와의 거리 관계등을 기입하고 교통약도(交通略圖)를 그려달라고 하였다.

다음 페이지에선 조사하는 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게 하였다. 소유자(所有者)의 성격(性格)을 적고 동거(同居)하고 있는 가족수(家族數)를 남녀로 나누어 쓰고 세대주(世帶主)의 직업(職業)을 기입하게 하였다. 그 집이 농가(農家)인지 아니면 상가(商家)인지 아니면 목축업(牧畜業)을 위한 산막(山幕)인지, 선비의 집인지를 가늠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다.

「집의 유래(由來)」를 자세히 쓰도록 하고 「집의 규모(規模)」를 기재하게 하였다. 동수(棟數)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와가(瓦家)와 초가(草家) 또는 기타(其他)에 속하는 건물이 있는지와 대지(垜地) 평수(坪數)와 건물을 다 합하였을 때의 건평(建坪)이 얼마나 되는지도 표기하게 하였다.

안채, 사랑채, 고간, 행랑채, 측간, 가묘, 헛간, 축사(외양간등), 대문간이 몇 동(棟)이고 몇 간(間) 몇 평(坪)인지와 초(草), 와(瓦), 기타(其他)를 구분하여 기록하게 하였다.

이어서 집의 모양(模樣)이, 주로 정침((正寢)(안채))을 기준삼아 一자집인지, ㄱ자, ㄷ자, ㅁ자, ㄱ자집인지 아니면 이들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것인지를 예시(例示)하여 해당하는데에 ○표 하도록 하였다. 집의 좌향(坐向)과 대문의 형태, 울타리, 굴뚝의 형상과 우물, 샘, 장독대, 후원(後苑)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록하도록 부탁하였다. 연못, 노거수(老巨樹)등이 있던지 할 때의 특기사항(特記事項) 등을 적도록 하고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등의 종류를 기록해 달라고 하였다.

마지막 페이지인 사혈(四頁)에는 전경사진(全景寫眞)(3×4)과 부분사진(部分寫眞)을 각각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표를 토대로 각 시도(試圖)에서는 자체(自體) 조사표를 따로 인쇄하여 시군(市郡)에 배포하고 시군공보실장(市郡公報室長)들을 불러 교육을 시킨 다음 실제 조사에 착수하였다.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表 紙〉

文化公報部

**全國聚落 및 傳統家屋(民家)調査記錄臺帳**

調査日字	年 月 日		分類番號
調査場所	道 郡 面 里 洞 地 號	調査者	

**傳統住宅(民家)의 調査基準**

- 1910年 前後의 時期에 세워진 家(최근 콘크리트 構造物은 除外)
- 마을에서 오래된 家. (部分的인 改造가 있어도 무방)
- 이런 家들이 이웃마을, 또는 마을의 一部分, 在來式의 風格과 要素를 지니고 있는 洞區
- 한울타리 안에 一部는 改良 되있어도 나머지가 在來式의 모습인 家(무덤 장독대, 우물(井), 지붕들이 部分改造되어도 無방)
- 元來는 木造였으나 이제 다 瓦蓋되고 한채나 두채만 남아 있는 家 또는 家廟나 祠堂等.
- 마을에서 쓰는 公共建物(亭子)이나 通過儀禮에 따라 세운 家 또는 城隍堂, 喪輿堂, 稗두막.

**調査者 記載 要領**

- 위 基準에 該当하는 家의 模樣에 따라 凡例의 分類인 方法으로 該當한에 記入한다.
- 記錄은 比較的 자세히 繪畫하게 하고 該當한에 없는 事項은 其他欄에 記錄한다.
- 家의 間數는 마을에서 부르는 洞區에 따르며 可及的 建塔의 模樣을 記錄한다.
- 家의 여러개 建物이 자리잡고 있는 位置를 그려 넣는다.
- 寫眞은 鮮明하게 影모를 파악 할 수 있게 찍어야 한다.

<표 지>



(三) Ⅱ

所 有 者	家族構成		計 名	男 女 名 名	職 業					
집의 由來 :										
집 의 規 模	집의 棟數	棟	草家 瓦家	棟 神	其他	棟	坐地 建坪	總	坪	
	안 假 (正假)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사당(家廟)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사당제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및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조 간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畜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정 방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대 문 간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축 간	棟	間 坪	五家( ) 草家( )	其他( )	밭이갈간 마구간, 마판, 정자	있다	棟	없다	있다	
집의 模樣	一字型( ) ㄱ字型( )		ㄷ字型( ) ㄹ字型( )		工字型( ) 其他( )		집의 坐向 :			
附 屬 設 置	大 門 의 形 態		우물·샘		있다	處	없다			
	울다리 남강의 形態		장 독 대		있다	個	없다			
	굴 독 의 形 態		후 원		있다	處	없다			
其他事項(例: 연못, 老巨樹등이 있는지의 여부)										
살림살이, 서간의 種類(在來式)										
<p>記載凡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다리 안에 자리잡은 모든집이 調査對象이 된다.</li> <li>○간수는 通稱하는 數이며 建坪은 가급적 精確히 기재.</li> <li>○몇 代에 사는 집인가 집안의 내력등을 유배단에 기재한다.</li> <li>○부속시설은 수합과 보수를 표기한다.</li> <li>○거다란에는 항목이 없는 사항을 기재한다.</li> </ul>										

## 2.

조사가 끝난대로 각 시도(市道)는 조사표를 취합하여 문화재(文化財)관리국(管理局)으로 보냈다. 취락(聚落)과 집을 조사한 수가 4,000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집에 관한 표가 3,343매(枚)이었다.

일단 수집된 자료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리적이냐가 논의되었다.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가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표에서는 1910년대 전후한 시기의 집을 위주로 조사해 주도록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나 실제 채록된 집 중에는 1945년도의 것도 있었다. 조사자의 안목으로는 시대의 판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주인의 증언에 따랐는데, 집주인들은 국가조사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혜택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사실과 다르더라도 창건(創建)된 연대(年代)를 오래된 듯이 과장하기도 하였어서 자연히 오류(誤謬)가 유발되었다.

조사자들은 마을의 기와집을 위주로 조사하여서 초가집이나 여타의 집의 수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 가기 쉬운 큰 길가의 집들을 위주로 했으므로 산곡간(山谷間) 깊은 곳에 있는 집들은 누락되었다.

소망하던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이나마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이들 자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로 하였다.

우선 3,342건의 조사표를 평가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 사람이 이 일을 평가하면 자칫, 그 사람의 학문적인 소양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 몇 사람을 초빙하여 공동으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선정되어 회의에 초빙된 분은 장주근(張籌根), 맹인재(孟仁在), 김광언(金光彦), 주남철(朱南哲), 김홍식(金鴻植) 제씨(諸氏)와 신영훈(申榮勳), 유문룡전 문위원(兪門龍專門委員)이었다. 이 중 장주근(張籌根) 교수는 사양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 분들은 정리된 조사표(調查表)를 전부 살펴보기로 하였다. 문화재이과(文化財二課)에서는 수집된 조사표를 도별(道別)로 철(綴)하여 놓았으므로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조사표를 살피기로 하였다.

철(綴)하여진 표에 따라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2과(課)의 실무진(實務陣)들은 4,000여건(취락(聚落)포함)을 망라하는 표를 작성하였다. 평가하실 여섯 분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은 후에 그 밑에 공란(空欄)을 두었다. 판정된 내용을 표기할 자리이다.

표기방법은 ○표 하기로 하고 기준은 장차 실사(實查) 하러 가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볼 필요가 없겠다는 것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약속에 따라 여섯 사람이 조사표 전부를 살펴보고 났을 때는 일람표에 빈 칸이 없는, ○표의 기호가 가득하였다. 2과(課)에서는 ○표의 통계를 작성하였다.

여섯 사람이 한 대상을 두고 ○표하였으므로 가봐야겠다는 데 ○표가 집중되기도 하고 가볼 필요가 없겠다는 데 몰리기도 하였으며 분산되기도 하였다. 여섯 사람이 모두 가봐야겠다고 의견이 일치된 것을 A로 분류하고, 한, 두 사람이 반대하였으면 B로, 세 사람이 반대면 C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취락을 제외한 3,343건 중 가 볼 필요조차 없겠다고 여섯 사람 전체가 부(否)의 의견을 모은 것을 제외하니까 A, B, C로 분류된 것이 2,332건(件)이었다. 그 내용을 도별(道別)로 나누어 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별표(別表) 1참고)

[別表 1] 전통가옥조사현황(傳統家屋調查現況)

지역	구분	A	B	C	D	비 고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	7	4		11	이미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등 으로 지정된 것은 조사에서 제 외(除外)됨 또 수몰지구내(水沒 地區內)에 있으면서 조사된 것 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산	4	3	1	8	
	구	3	5	2	10	
	기	19	7	3	29	
	원	52	35	11	98	
	북	57	20	5	82	
	남	283	274	162	719	
	북	30	12	1	43	
	남	32	12		44	
	북	566	445	124	1,135	
	남	37	21	2	60	
	주	39	35	19	93	
	계(計)		1,129	873	330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제 현지 확인 조사를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에서 문 제점이 대두되었다. 2,332건을 조사하자면 한 사람이 하루에 1건씩 조사한다면 2,332일이 걸 리고 그것을 6인이 나누어 한다면 388일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조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처지이므로 단축시켜 1인이 하루에 집 두 채를 본다면 6인이 194 일이 걸리겠다.

각자 교수(教授)등의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6인 전원이 다 나설 수 없는 형편이므로 시간 의 여유를 보아가면서 하여야 된다면 1, 2년의 작업으로는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 다.

2과(課)에서는 2,332건을 한번 더 검토하여 약 1/2정도로 축소하면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 느냐는 제의를 하였다. 이 제의의 타당성 여부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없었다. 이러한 중에 1980년도는 다 지나가고 말았다.

1981년도에도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그 때 생각난 일이 지도(地圖)에 조사된 대상을 표기(表記)하여 보자는 것이었 다. 2과(課)에서 구입(購入)하여준 50,000:1의 전국지도책(全國地圖冊)을 놓고 조사표에 기록 된 지명(地名)을 찾아 기입하기 시작하였다. 조사된 집 정침(正寢)의 평면형태(平面形態)를 기호(旗號)로 만들고 그 것을 위치에 따라 도장찍어 나갔다. 이 기호는 유문룡(兪門龍)씨가 도안(圖案)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sup>일</sup> 자집	ㄱ <sup>날개</sup> 자집
▣ <sup>앞</sup> 퇴—자집	日 <sup>日</sup> 자집
▤ <sup>양</sup> 퇴—자집	丁 <sup>丁</sup> 자집
ㄱ ㄱ자집	H <sup>고</sup> 자집
ㄱ <sup>앞</sup> 퇴 ㄱ자집	ㄱ 그자형평면
⊕ <sup>겹</sup> 집	ㄱ <sup>고</sup> 자형평면
ㄱ <sup>날개</sup> 겹집	ㄱ <sup>튼</sup> 고자형평면
ㄱ ㄷ자집	ㄷ <sup>초</sup> 가집

<page 57 기호(1)>

ㄱ <sup>튼</sup> 자집	▲ <sup>까치</sup> 구멍집
□ <sup>口</sup> 자집	ㄷ <sup>다</sup> 락집
ㄱ <sup>일</sup> 방 <sup>튼</sup> 자집	

<page 57 기호(2)>

도장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날인(捺印)이 집중되는 지역과 영성한 지역으로 나뉘고 집중되는 지역은 상호(相互) 연결이 가능하다. 경북지방(慶北地方)에서 처럼 조사된 수(數)가 많은 곳에서는 집중지역의 연결이 농후한데 이들은 국도(國道)나 고속도로(高速道路)에서는 떨어져 있다. 철도(鐵道)와도 상거(相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김정호제작(金正浩製作))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道路)와 일치(一致)하고 있다.

지금도 도시(都市)와 도로(道路)가 직결되어 있듯이, 도록변(道路邊)의 발달이 있듯이 옛날에도 대로(大路)에 연(沿)하여 취락이 발달하고 그런 마을에 크고 작은 집들이 경영되었다. 남아있는 중요한 살림집들이 대부분 그런 고장에 있다.

지도(地圖)에 표시하는 작업만도 전후 4개월(個月)을 소비하였다. 지도에 표시하고 보니 이들을 단위별로 묶어서 살펴보는 방안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략 500개소로 대별(大別)될 수 있다고 분류하였다. 이 500개소만 집중조사하면 대략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다. 500개소라면 6인이 10여개소를 맡는 일이니까 여름, 겨울 방학때 집중하면 교수님들도 큰 지장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으로 기획을 수립함은 아직 이를 듯해서 조사표를 들고 나가 표본조사(標本調査)를 하여야 윤곽이 뚜렷해질 듯 하다고 건의하고 출장을 신청하였다. 경기도(京畿道)의 이천지방(利川地方), 충남(忠南)의 예산지방(禮山地方), 충북(忠北)의 영동지방(永同地方), 전북(全北)의 남원지방(南原地方), 전남(全南)의 담양지방(潭陽地方)등이 조사지로 선정되었다.

해당지역의 실재를 알기 위하여 도(道)·시(市)·군(郡)에 일체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찾아다니 보았다. 이리저리 물으면서 다녔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되었다고 말하는 집에 찾아가 보니 과연 나이를 먹었는데 조사표에는 누락되고 없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사항에 상면하였다. 바로 옆집이 더 오래된 같은 성씨택(成氏宅)의 선대(先代)의 집인데 그것은 조사하지 않고 옆의 기와집만 조사하였다. 선대(先代)의 집은 규모가 작고 낡았다. 그 이웃엔 아주 오래된 초가(草家)가 있었는데 역시 누락되어 있었다.

큰 길 가에서 조금만 벗어난 곳에 있어도 역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1차의 이 조사는 담당자에 따라 충실하게도, 소략하게도 되었어서 앞의 일람표에서 보듯이 서울에 11동(棟)밖에 없을 수 없고, 경기도에 20동(棟)밖에 있을리 있겠느냐는 의문이 이해된다.

표본조사 이후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여 마무리 할 것이냐의 문제만을 이따금 논의하였다.

이 기간에 충청도(忠北道)에서는 『중원문화권유적도(中原文化圈遺蹟圖)』가 제작되었다. 국방(國防), 불적(佛蹟), 봉수(烽燧)등의 분포(分布)가 지도상(地圖上)에 수록되었다. 처음있는 유적분포도(遺蹟分布圖)의 제작이었다. 이 지도제작을 위한 지표조사시(地表調査時) 살림집의 일부도 자료로 수집한 바 있었으나 지도에 표기하는 일에서는 제외되었다.

### 3.

1983년 1월에 전통가옥(傳統家屋)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약간 주춤한 상태에 있었던 조사업무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2,332건에 대한 현지 조사 계획이 수립되는 동안에 기왕에 지정 보호되고 있는 자료도 정리하여 보았다.

문화재이과(文化財二課)에서는 국가지정(國家指定), 지방지정(地方指定)의 전통가옥지정현황(傳統家屋指定現況)을 정리하여 일람표를 만들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하였다.

[別表 2] 傳統家屋 指定現況

指定別 類形別	國家指定		地方指定		計		備考
	件數	棟數	件數	橫數	件數	棟數	
기와집	33	102	97	147	130	249	
초가집	15	25	7	196	22	221	
너와집	1	2	—	—	1	2	
計	49	129	104	343	153	472	

[別表2] 전통가옥 지정현황(傳統家屋 指定現況)

지정(指定)된 중요 전통가옥(傳統家屋)의 방명(芳名)은 별표(別表) 3과 같다.

1981. 12. 31 현재

指定別 番號	名 稱	所 在 地	指定年月日
寶物 165호	江陵 烏竹軒	江原道 江陵市 竹軒洞 201	1963. 1. 21
寶物 182호	安東 臨清園正枕 君子亭	慶北 安東市 法興洞 20	1963. 1. 21
寶物 183호	江陵 海雲亭	江原道 江陵市 雲亭洞 256	1963. 1. 21
寶物 209호	懷德 同春堂	忠南 大德郡 懷德面 宋村里	1963. 1. 21
寶物 306호	安東 養眞堂	慶北 安東郡 豐川面 河回洞	1963. 1. 21
寶物 411호	無參堂	慶北 月城郡 江東面 良洞里	1965. 11. 14
寶物 412호	香壇	"	"
寶物 413호	獨樂堂	"	"
寶物 414호	忠孝堂	慶北 安東郡 豐川面 河回洞	"
寶物 442호	觀稼亭	慶北 月城郡 江東面 良洞里	1966. 4. 11
寶物 450호	安東 義城金氏 宗宅	慶北 安東郡 臨河面 川前洞	1967. 6. 23
寶物 457호	醴泉權氏 宗家 別堂	慶北 安東郡 龍門面 竹林洞	1967. 6. 23
寶物 475호	安東 蘇湖軒	慶北 安東郡 一直面 望湖洞	1968. 12. 19
寶物 553호	禮安 李氏宗家	慶北 安東郡 豐山邑 下里洞	1671. 8. 30
寶物 554호	太古亭	慶北 遂城郡 河濱面 妙洞	1971. 12. 6

指 定 別 番 號	名 稱	所 在 地	指 定 年 月 日
史蹟 109主	牙山 孟氏杏壇	忠南 牙山郡 排芳面 中里	1958. 1. 23
史蹟 167主	海南 尹氏錄雨壇	全南 海南郡 海南邑 蓮洞里	1968. 12. 19
重要民俗資料 5主	江陵 船橋莊	江原道 江陵市 雲亭洞	1967. 4. 18
" 8主	求禮 雲鳥樓	全南 求禮郡 土首面 五美洞	1968. 11. 23
" 10主	昌寧 河炳洙氏家屋	慶南 昌寧郡 昌寧邑 述亭洞	1968. 11. 23
" 23主	月城 孫東滿氏家屋	慶北 月城郡 江東面 良洞里	1970. 12. 29
" 24主	永川 鄭在水氏家屋 및 山水亭	慶北 永川郡 臨阜面 三梅洞	1970. 12. 29
" 25主	義城 金東周氏家屋	慶北 義城郡 丹村面 後坪洞	1970. 12. 29
" 26主	井邑 金東洙氏家屋	全北 井邑郡 山外面 五公里	1971. 5. 26
" 27主	慶州 崔植氏家屋	慶北 慶州市 校洞 69	1971. 5. 26
" 33主	三陟 新里所在 寺와 硯 및 民俗遺物	江原道 三陟郡 道溪邑 新里	1975. 10. 13
" 34主	慶州 塔洞金憲塔古家屋	慶北 慶州市 塔洞	1976. 12. 31
" 39主	高敞 申在孝古宅	全北 高敞郡 高敞邑 邑內里	1979. 1. 23
" 105主	海平 崔相鶴氏家屋	慶北 善山郡 海平面 海平洞	1979. 12. 28
" 106主	清道 雲岡故宅	慶北 清道郡 錦川面 新谷洞	1979. 12. 28
" 107主	永川 鄭容俊氏家屋	慶北 永川郡 臨阜面 仙源洞	1979. 12. 28
" 108主	英陽 瑞石池	慶北 英陽郡 立岩面 蓮塘洞	1979. 12. 28
서울特別市地方有形文化財 22主	武漢精舍	서울 鍾路區 付岩洞 329	1974. 1. 15
" 23主	大院郡別莊	서울 鍾路區 弘智洞 125	1974. 1. 15
" 26主	石校亭	서울 鍾路區 付岩洞 16-1	1974. 1. 15
地方民俗資料 7主	長橋洞 韓圭高大監家	서울 城北區 貞陵洞 國民大學校內	1977. 3. 17
8主	三清洞 金洪基家	서울 鍾路區 三清洞 125	1977. 3. 17
9主	社稷洞 鄭在文家	서울 城東區 毛陣洞 145	1977. 3. 17
10主	城地洞 李在濬家	서울 城北區 城北洞 243	1977. 3. 17
11主	城北洞 李太賢家	서울 城北區 城北洞 248	1977. 3. 17
12主	付岩洞 尹應烈家	서울 鍾路區 付岩洞 348	1977. 3. 17
13主	苑西洞 白鴻範家	서울 鍾路區 苑西洞 9-5	1977. 3. 17
14主	嘉會洞(產業銀行所有)	서울 鍾路區 嘉會洞 178	1977. 3. 17
15主	慶運洞 閔斗子家	서울 鍾路區 慶運洞 66-7	1977. 3. 17
16主	慶運洞 鄭淳周家	서울 鍾路區 慶運洞 66-8	1977. 3. 17
17主	龍江洞 鄭求中家	서울 麻浦區 龍江洞 338	1797. 3. 17
18主	寬勳洞 李進承家	서울 鍾路區 寬勳洞 30-1	1977. 3. 17
19主	雲泥洞 金承鈺家	서울 鍾路區 雲泥洞 114-9	1977. 3. 17
20主	朝興銀行所有	서울 中區 三角洞 36-2	1977. 3. 17
21主	明倫洞 金鍾玉家	서울 鍾路區 明倫洞 35號 15	1977. 3. 17
22主	嘉會洞 白麟濟家	서울 鍾路區 嘉會洞 93-1	1977. 3. 17
23主	玉仁洞 徐龍澤家	서울 鍾路區 玉仁洞 47-333	1977. 3. 17
24主	祭基洞 鄭奎業家	서울 東大門區 祭基洞 224	1977. 3. 17
25主	長位洞 金劉興家	서울 城北區 長位洞 76	1977. 3. 17
27主	安國洞 孔德貴家	서울 鍾路區 安國洞 8-1	1978. 8. 18
大邱直轄市 1主	屯山洞 慶州崔氏宗家 및 榑木堂 祠堂	大邱 東區 屯山洞 386	1982. 3. 4

指 定 別 番 號	名 稱	所 在 地	指 定 年 月 日
京畿道地方記念物 63主	魚在淵將軍生家	京畿 利川郡 栗面 山城里	1981. 7. 16
江原道 地方有形文化財 50主	江陵 放海亭	江原 江陵市 亭洞 8	1976. 6. 17
忠北道地方有形文化財 74主	槐山 城山里古家	忠北 槐山郡 七星面 城山里	1980. 11. 13
83主	清風 桃花里古家	忠北 堤原郡 清風面 桃花里	1981. 5. 1
84主	清風 黃石里古家	忠北 堤原郡 清風面 黃石里	1981. 5. 1
85主	清風 後山里古家	忠北 堤原郡 清風面 後山里	1981. 5. 1
86主	錦城 中田里古家	忠北 堤原郡 錦城面 中田里	1981. 5. 1
87主	崔福月古宅	忠北 中原郡 望味面 武陵里	1981. 5. 1
88主	金世均判書古家	忠北 堤原郡 寒水面 北老里	1981. 5. 1
89主	水山 池谷里古家	忠北 堤原郡 水山面 池谷里	1981. 5. 1
忠北道地方民俗資料 4主	望味 新梅里古家	忠北 中原郡 望味面 新梅里	1976. 12. 23
5主	寒水 鴨梧里古家	忠北 堤原郡 寒水面 鴨梧里	1976. 12. 23
忠南道地方有形文化財 5主	懷德 雙清堂	忠南 大德郡 懷德面 中里	1973. 12. 24
6主	懷德 同春先生故宅	忠南 大德郡 懷德面 宋村里	1973. 12. 24
39主	尹拯先生故宅	忠南 論山郡 魯城面 校村里	1976. 1. 8
43主	金正喜先生故宅	忠南 論山郡 新岩面 龍宮里	1976. 1. 8
45主	和順翁主紅門	忠南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1976. 1. 8
68主	李南珪先生故宅	忠南 禮山郡 大遼面 上項里	1976. 7. 7
83主	李廣任先生故宅	忠南 禮山郡 大遼面 方山里	1978. 12. 30
全北道地方記念物 6主	李秉基先生生家	全北 益山郡 曠山面 源水里	1973. 6. 23
21主	李石亭先生生家	全北 金堤郡 白山面 上井里	1974. 9. 24
39主	仁村先生生家	全北 高敞郡 富安面 羅岩里	1977. 12. 31
全北道地方民俗資料 8主	學思堂	全北 全州市 橋洞	1976. 4. 2
12主	李雄宰古家	全北 任實郡 屯南面 屯德里	1977. 12. 31
全南道地方記念物 5主	達讓閣	全南 陽陽郡 南面 芝石里	1972. 8. 7
全南道地方民俗資料 3主	靈巖月谷里 全氏古宅	全南 靈岩郡 郡西面 月谷里	1978. 9. 22
4主	靈光 延安金氏家	全南 靈岩郡 郡南面 東潤里	1980. 6. 2
慶北道地方有形文化財 23主	固城李氏書舍	慶北 安東郡 禮安面 樂仕洞	1973. 8. 31
25主	琴易堂祠堂 吳 宗家	慶北 安東郡 臨河面 松川洞	1973. 8. 31
26主	櫻清亭 吳 宗家	慶北 安東郡 臥龍面 烏川洞	1973. 8. 31
27主	後形堂 吳 齋舍	慶北 安東郡 臥龍面 烏川洞	1973. 8. 31
49主	陶谷齋	慶北 達城郡 河濱面 立少洞	1974. 12. 10
52主	月潭軒 吳 溪陽趙氏宗宅	慶北 英陽郡 英陽邑 下元洞	1974. 12. 10
72主	五懷公宗宅	慶北 永川郡 榮陽面 三龜洞	1975. 8. 18
80主	崔海根氏家屋	慶北 慶山郡 龍城面 谷蘭洞	1975. 8. 18
81主	友琴村斗巖古宅	慶北 榮豐郡 伊山面 新岩里	1975. 12. 30
82主	花樹樓	慶北 盈德郡 吾水面 葛川洞	1975. 12. 30
85主	尙州 養鶴堂	慶北 尙州郡 洛東面 升谷里	1975. 12. 30

指定別番號	名稱	所在地	指定年月日
90호	鄭氏宗宅 및 祠堂	慶北 永川市 大田洞 52	1977. 7. 15
慶北道地方民俗資料			
2호	葛川洞草家자치구명길	慶北 盈德郡 蒼水面 葛川洞	1975. 12. 30
3호	南平文氏本里世居地	慶北 達城郡 花園面本里洞	1975. 12. 20
4호	申正淳瓦家口길	慶北 安東郡 禮安面 西部洞	1973. 8. 31
5호	李直鎬瓦家口字길	慶北 安東郡 禮安面 東部洞	1973. 8. 31
6호	草家도포마리길	慶北 安東市 城谷洞 山 225-1	1973. 8. 31
7호	瓦家贊南宅	慶北 安東郡 陶山面 宜村洞	1973. 8. 31
8호	李源康氏瓦家口길	慶北 安東郡 陶山面 丹川洞	1973. 8. 31
9호	李潤惠氏瓦家口字길	慶北 安東市 安幕洞 119	1973. 8. 31
10호	李陸史生家	慶北 安東市 太華洞 672-9	1973. 8. 31
11호	李源鳳氏瓦家口字길	慶北 安東市 安幕洞 119	1973. 8. 31
14호	草家도담길	慶北 安東市 城谷洞 山225	1973. 8. 31
15호	加波洞朴氏古家	慶北 安東郡 豐山邑 槐亭洞	1973. 8. 31
19호	熱溪書院 및 安東金氏熱溪宗宅	慶北 安東郡 吉安面 熱溪洞	1980. 6. 17
20호	廣州安氏古家	慶北 水川郡 琴湖邑 道南洞	1980. 6. 17
25호	安東金氏台庄齋舍	慶北 安東郡 豐山邑 素山洞	1981. 4. 25
27호	安東金氏北涯宗宅	慶北 安東郡 豐山邑 玄涯洞	1981. 4. 25
慶南道地方有形文化財			
159호	漁溪生家	慶南 咸安郡 郡北面 院北里	1976. 12. 20

[別表3] 국가(國家) - 지방(地方) 문화재(文化財)인 전통가옥(傳統家屋)

이상(以上)의 명품(名品)들 말고 제주도(濟州道)에서는 도내(島內)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1978.11.14에 제주시(濟州市) 삼양동(三陽洞) 강운봉씨택을 위시하여 외도(外都), 애월(涯月), 조천(朝天), 구재읍(舊在邑), 대정(大靜), 안덕(安德), 서귀포(西歸浦), 남원(南元), 표선(表善) 등지의 초가(草家) 90건(件)을 지정하였다. 이 중에서 표선면(表善面)의 성읍리(城邑里)는 「성읍민속(城邑民俗)마을」로 지정되었다.

민속(民俗)마을을 지정하는 일은 사적(史蹟)으로 하는 것과 지방민속자료(地方民俗資料)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적지정(史蹟指定) 마을은 1983.6.14에 지정한 전남(全南) 승주군(昇州郡) 「낙안성읍(樂安邑城)」(마을)이고 지방민속자료는 안동의 하회(河回)마을과 월성(月城)의 양동(良洞)마을 그리고 제주(濟州)의 성읍(城邑)마을이다. 이들의 내용을 표(表)로 만들어 보면 별표(別表)와 같다.

(別表 4) 史蹟指定마을

區分 所在地	指定名稱	指定番號	指定		指定日字
			地 路	家 屋 數	
全南 昇州郡	樂安邑城	史蹟 第302號	城內 41,018坪 城外 26,472坪	155家屋	1983. 6. 14

[別表4] 사적지정(史蹟指定)마을

[別表 5] 地方民俗資料 指定마을

所在地	指定名稱	指定番號	指定		指定日字
			地	家屋數	
慶北 安東郡	安東河回마을	慶北道地方民俗資料 23.호	107,161坪	125家屋	1980.12.30
慶北 月城郡	月城良洞마을	" 24.호	171,357坪	151家屋	1980.12.30
濟州 南濟州郡	城邑民俗마을	濟州道地方民俗資料 5.호	31,312坪	97家屋	1980.5.17

[別表5] 지방민속자료(地方民俗資料) 지정(指定)마을

[別表 6] 都市計画法 建築法에 의한 韓屋保存地域設定

區分	指定地域 및 面積	指定日字	規 定	備 考
서울시	鍾路區 三清洞, 安國洞, 嘉會洞, 桂洞, 寶洞, 可謙洞, 昭格洞, 花洞, 苑西洞, 松板洞, 192,000坪	1983. 5. 4	서울시, 建築條例第10條 第4號	第4種美觀地區
慶州市	皇南洞, 皇吾洞, 校洞, 仁旺洞 583,825坪	1981. 9. 21	慶州市建築條例施行規則 第399號	第4種美觀地區
全州市	豐南洞, 校洞 87,120坪	1977. 4. 18	都市計画法 第18條	

[別表6] 도계획법(道計画法)과 건축법(建築法)에 의(依)한 한옥보존지역설정(韓屋保存地域設定)

이들 말고 도시계획법(都市計画法)이나 건축법(建築法)으로 보호되어 있기도 하다. 서울과 전주시(全州市)가 대상이 되었다. 그 내용을 역시 표(表)로 만들어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국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살림집들의 분포(分布)를 보면 일정한 지역에 편중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보존조치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다. 담당자들의 의식이 그만큼 민감하지 못하였다던가 이 방면의 영향있는 전문가가 없었다던가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땀의 건설로 살림집의 보존조치가 월등하게 늘어난 고장도 있다. 수몰(水沒)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었으므로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땀등의 건설이 없었던 지역에서는 보존조치에 등한하였다. 그래서 편중되는 감이 생겨났다. 이런 경향은 1차 조사표의 수집에서도 드러나 관심이 덜한 시도(市道)에서는 적극적인 자료수집이나 조사표 작성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번 더 편중을 낳게 하는 계기도 되는데 담당자의 이해력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 4.

장구한 역사를 지닌 긍지있는 민족들은 전통가옥보존(傳統家屋保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구한 세월의 풍상(風霜)은 그들 건축물들을 낡게 만들어서 차츰 그 수명(壽命)이 단축되는 단계에 있으므로 보존조치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사회(社會)의 의식(意識)과, 발전을 거듭하는 문물(文物)과 그 성향(性向)을 전위적(前衛的)인 시험(試驗)이라는 저들성 마저 띄운채로 옛것과 마찰한다. 대중(大衆)의 호응을 받는 현대적 첨단(尖端)이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만으로 힘없이 버티고 있는 옛것을 흐트러 버리려 한다. 도심(都心)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도시계획(都市計劃)의 새

로운 이론(理論)과 실천에서 걸리적거리는 옛것은 도태(淘汰)의 대상이 된다. 이론적 도시(理論的都市)의 완성을 위하여는 다소의 희생이 감수되어야 한다는 명분(名分)이다.

옛것을 보존(保存)하는 일이 사명(使命)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혐오한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 지상(至上)이라도 주장한다. 정책(政策)에 압력을 받거나 해서 보존(保存)대책을 강구한다. 법령(法令)을 제정해서 까지라도 강력하게 저지하여서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목적을 둔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이과(文化財二課)에서는 여러 나라의 법령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 중의 몇 나라의 법을 발췌하여 대요(大要)만을 정리해 보았다.

## 영국(英國)

### 1. 건조물(建造物)·지화재보호(支化財保護)

영국(英國)에서는 「고대기념물보호법(古代記念物保護法)」(1982년 제정(年制定)) 「고대기념물(古代記念物)에 관한 통합개정법(統合改正法)」(1913), 「고대기념물법(古代記念物法)」, 「도시전원계획법(都市田園計劃法)」, 「역사적 건조물(歷史的 建造物) 및 고대기념물법(古代記念物法)」, 「경관법(景觀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역사적건조물(歷史的建造物) 및 고대기념물법(古代記念物法)

○ 역사적 건조물(歷史的 建造物)은 도시전원계획법(都市田園計劃法)에 의거하여 국가에 등록(登錄)한다. 저택(邸宅) 등은 여러 가지 여건과 중세(重稅),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모습을 지키도록 한다.

○ 역사적으로 건축미술로나 현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록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어 수리와 유지를 돕는다. 또 이런 건물이 있는 인근의 근접지(根接地)를 매수하거나 하여 변형(變形)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도시전원계획법(都市田園計劃法)

○ 국토(國土) 전체의 개발에 연관된 법률로 등록된 중요 건조물의 보존과도 관계된다.

○ 등록된 건조물이 있는 보존지역(保存地域)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은 허가(許可)를 받아 시행하게 하였다.

○ 역사적으로나 건축미술사상 뛰어난 건조물을 등록하고 그 대장을 정비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1975년도 현재로 이 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건조물은 166,000개소(個所)이다. 이에 따라 보존지구(保存地區)를 지정(指定)하였는데 약 2,000개소이다.

○ 등록된 건조물의 증(增)·개축(改築)을 허가 감독하며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건조물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 수리가 꼭 필요한 등록된 건조물은 수리를 중용하고, 불응시(不應時)에는 강제로 취득하여 시공한다.

○ 건조물에 대한 손실보상(損失補償)과 보조금을 교부한다.

## 프랑스

### 1. 건조물(建造物)·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

프랑스에는 역사적기념물보호법(歷史的記念物保護法)과 역사적가곽보호법(歷史的街廓保護法)이 있다.



#### 가. 역사적 기념물보호법(歷史的 記念物保護法)

○ 역사적(歷史的)으로, 학문적(學問的)(미술사상(美術史上))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조물(建造物)과 토지(土地)등을 지정하는 일과 조사된 목록(目錄)을 작성하여 등록시키는 일을 정하고

- 등록된 건조물들의 보존을 위한 보수등의 경비를 보조하며
- 필요한 건조물이나 토지를 수용(收用)하거나 손실(損失)을 보상하여 주고
- 보수가 필요한 건조물은 소유주에게 보수(補修)할 것을 명령(命命)하기도 하며
- 현상변경 등의 요구를 조사하여 허가하는 임무와
-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장료(入場料)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들을 맡아하게 하였다.

#### 나. 역사적가곽보호법(歷史的街廓保護法)

- 건조물(建造物)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넓이의 보호구역을 지정
- 보존(保存)의 대책과 보호(保護)를 위한 장기대책(長期對策)과 계획(計劃)을 수립(樹立)
- 필요에 따른 현상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의 허가제도
- 국민은 보존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 스위스

### 1. 자연(自然)과 향리보호(鄉里保護)에 관한 연방법률(聯邦法律)

- 1966연도(年度)에 제도(制度)
- 연방(聯邦)은 자연풍치(自然風致)와 취락형태(聚落形態)의 보존(保存)에 유의(有意)하면 서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이 우선하는 한 이를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보존가치가 인정된 취락(聚落)등은 현상의 형태를 기록 보존한다.
- 연방(聯邦)은 최고 50%까지의 유지, 보존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로라도 취할 수 있고 토지(土地)를 수용(收用)할 수도 있다.
-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와 자연향리보호국(自然鄉里保護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오스트리아

### 1. 오스트리아는 연방국(聯邦國)

건조물보존(建造物保存)에 대하여는 각주법(各州法)에 제정운영(制定運營). 「잘즈부르그州」의 예(例). 「취락형태보존법(聚落形態保存法)」.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이 있다. 이들 법조문에는 건조물(建造物)의 수리행위(개수(改修), 창문대체(窓門代替), 채색(彩色))에 대하여도 허가 받도록 세밀(細密)한 조항을 두어 규제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광고물(廣告物)의 설치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 가. 잘즈부르그州 취락형태보존법(聚落形態保存法)

- 특정(特定)의 건조물(建造物)이나 도시(都市)와 취락(聚落)의 형태를 옛 모습대로 보존하여 원형(原形)을 유지한다.
- 옥외(屋外)의 광고물(廣告物) 부착이나 설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된 것은 철거하도록 조치한다.
- 건조물(建築物)의 수리나 현상변경은 허가 받아서 시공할 수 있다.

- 새로 신축하려는 건물은 도시나 취락의 경관과 조화되는지 여부의 검토를 받고 허가된다.
- 보존구역내의 모든 건조물에는 고유한 기호를 부착하여 이에 따른 목록의 작성과 찾아보기 쉽게 색인(索引)을 만든다.
-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위촉한다.
- 건조물(建築物) 보존을 위한 고도보존기금(古都保存基金)을 설치한다.
- 건조물(建築物) 보수나 유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서독

### 1. 바이엘른州의 기념물보호(記念物保護), 관리법률(管理法律)

가. 서독에서는 프랑스와 함께 목록(目錄)을 작성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등록된 대상을 주축으로 보존하는 조치가 취하여져 있다. 바이엘른州의 법률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 역사적(歷史的)으로, 학문적(學問的)으로, 도시계획상(都市計劃上) 가치가 있는 건축기념물(建築記念物)을 선정하고 그것의 목록(目錄)을 작성하여 등록 보존한다.
- 건축물(建築物)의 소유자에게 변형(變形)없이 보존할 의무를 부여한다.
- 관계관공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존조치할 수 있으며 시공을 맡아 실시하거나 소유주에게 보수의 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 현상 변경 등의 필요시엔 허가 받는다.
- 기념물(記念物)에의 출입(出入)을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다.
- 관공서는 건축기념물(建築記念物)의 매각시 선매권(先買權)을 갖는다.
- 보조금(補助金)을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고 세제(稅制)에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미국(美國)

### 1. 미연방법전(美聯邦法典) 第16篇 「보호(保護)」

가. 「보호(保護)」법(法)의 중요성

- 역사상 학문상(歷史上 學文上) 주요 건조물을 보존하며 공공(公共)의 용도(用途)에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책이다.
- 보수(補修)와 고증조사(考證調查)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입장료(入場料) 징수를 허가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 건축물 소유자나 기타 보조금을 받는 개인 단체는 기록보존의 의무를 지닌다.

## 일본(日本)

### 1.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가. 동법(同法) 5장에 표현된 내용

○ 전통적 건조물군(傳統的 建造物群)을 보존조치 할 수 있는데 이 전통적 건조물군이라 함은 「주위(周圍)의 환경과 일치를 이루어 역사적 풍치(風致)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인 건물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이라고 정의(定義)하였다.

○ 이에따라 시(市)·정(町)·촌(村)은 조례(條例)를 만들어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傳統的 建造物群 保存地區)」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문부대신(文部大臣)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傳統的 建造物群 保存地區)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重要傳統的 建造物群 保存地區)」로 선정한다.

○ 군(郡)·도(道)·부(府)·현(縣)의 지사(知事)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미리 보존지구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의 의견을 듣는다.

○ 교육위원회(教育委員會)는 보존(保存)에 관하여 市·정(町)·촌(村)을 지도하며 조언(助言)할 수 있다.

○ 국가는 건조물 또는 환경보존을 위한 관리나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고도 역사적 풍토보존(古都 歴史的 風土保存)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古都)(京都, 奈良市등)의 역사적 풍토의 적정(適正)한 보존에 노력하고 국민은 행정조치(行政措置)에 협력하여야 한다.

○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역사적 풍토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역사적 풍토보존계획을 수립한다.

○ 역사적 풍토보존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짓고자 할 때엔 신고를 해야하고 특별보존지역이면 허가 받아야 한다.

○ 부(府)·현(縣)의 지사(知事)는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 국가는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補助)할 수 있다.

○ 역사(歴史), 풍토심의회(風土審議會)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발전 등에 따라 옛 취락과 고가(古家)들이 자취를 감추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 등한시하였던 전통가옥보존(傳統家屋保存)에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로서의 의지(意志)가 돋보이는 노력이다. 되도록 많은 중요한 살림집을 보존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제 2차의 조사는 이런 상황아래에서 실시되었다.

## 5.

2차 조사는 83년 여름에 착수하였다. 1차조사에서 선정된 A,B,C급의 2,332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A급 1,129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맡아 조사하고 B,C급은 해당 각 시·도에서 자체조사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조사에 대비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통가옥조사서(傳統家屋調査書)」라는 표를 작성하여 인쇄 배부하였다. 조사된 건물(建物)마다 이 표를 작성하라는 부탁이다. 이 표도 역시 유문룡(兪門龍)씨가 작성하였다.

조사년월일(調査年月日) 조사자(調査者)의 성명을 기입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기록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생각이다.

표는 가옥명(家屋名), 소유자(所有者), 관리자(管理者)의 성명(姓名)을 기록하는 일로 부터

시작된다. 소재지(所在地), 대지(垓地)의 평수(坪數)를, 동거인(同居人)의 남녀수(男女數)를 기록하고는 집의 평면유형(平面類型)을 예시(例示)한 부호에 따라 ○표를 치게하고 집의 배치형태(配置形態)도 제시된 부류에 따라 ○표하게 하였다. 집의 좌향(坐向)과 같이 집이 와가(瓦家)인지, 초가나 여타의 것인지도 표시하게 하고 집의 규모를 물었다. 안채, 사랑채, 안행랑채, 행랑채, 안사랑채, 고간채, 헛간채, 측간, 문간채, 삼문, 사주문, 협문, 외양간, 마굿간, 마차고, 방앗간, 사당, 정자, 기타 간수의 규모를 평(坪)의 단위로 기록하게 하고 담장의 길이가 대략 얼마나 되겠느냐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부속시설을 굴뚝(재래식(在來式))(현대식(現代式)) 우물, 샘, 연못, 장독대, 바깥마당, 안마당, 뒷마당, 정원수의 형태, 농기구, 기타에 관하여서도 있는대로 표기해 주길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집의 주위상태(周邊狀態)가 어떤지를 묘사해 달라하고, 조사자(調查者)가 느낀 의견을 서술하게 하였다. 끝으로 보신 집의 수준으로 치면 그것이 장차 국가(國家)나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서의 후보가 될만 한지 아니면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서 족한지를 평가(平價)해 주십시오 하는 난을 만들었다. 개악(改惡)이 심하다던가 하는 것의 처리를 위하여 보존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하다는 것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 표에 첨가하도록 방안지(方眼紙)를 만들었다. 건물의 평면(平面)이나 입면(立面)을 실측(實測)해서 작도(作圖)하라는 용지(用紙)이다.

각시군(各市郡)에서 제출한 1차때의 조사자료와 함께 이 표를 들고 현지조사에 나섰다.

김주태 전문위원(金周泰 專門委員)이 문영빈 문화재 연구소 건축기사(文永彬 文化財 研究所 建築技士)와 함께 전북지방(全北地方)을 담당하고 김홍식(金鴻植) 명지대(明知大) 교수가 전남(全南)과 충북지방(忠北地方)을 맡고 김일진(金一鎭) 영남대(嶺南大) 교수가 경북지방(慶北地方)을 신영훈(申榮勳)이 보수과(補修課)의 김성배(金成培) 건축위원(建築技員)과 함께 강원도 지방(江原道 地方)을 맡아 조사하였다. 나머지 지구는 시(市)·도(道)가 위촉하는 전문가가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가 집계되었다. 표에 의한 기록과 각각의 집 배치, 평면도가 작성되었다. 방대한 조사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재이과(文化財二課)에서 집계한 表에 따르면 1차 자료수집시 정리된 대상이 2,332건이었는데 이번에 실사된 것은 2,261건으로 당초보다 71건 줄었다고 한다. 이미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35건과 그 동안 변형(變形), 철거(撤去)등 변동된 것 36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2,261건중 913건은 913건은 잔통가옥(傳統家屋)이란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제외하여도 좋겠다고 한다. 조사자들의 의견은 변형(變形)이 심하거나 개수시(改修時)에 너무 편의(便宜) 위주로만 시공하여서 옛스러운 자태를 이미 잃었거나 손상(損傷)하여서 원형보존(原形保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제외되어 마땅하다고 한다.

2,261건 중에서 913건을 제외한 1,348건이 검토되었다. 일차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을 다시 1,2,3의 유형(類形)으로 구분하였다.

1,348건 중에서 1류(類)로 분류된 것이 247건, 2류(類)로가 442건(件), 3류(類)가 659건이다. 이들을 이제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자들이 지역에 국한된 안목이었으므로 전국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평가기준을 설치하고 하나 하나를 대입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부부만이 단출하게 살기 때문에 넓은 여타의 건물은 폐쇄한 채로 두어둘 수밖에 없는데 쥐가 난장판을 치면서 도배지를 죄 뜯어내고 고래에 불기가 없으니 방바닥이 꺼지는 등의 피해가 생기며, 새는 빗물로 서까래 등이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동력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기와를 주변에서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릉(江陵)의 어느 집주인은 기와를 사고 싶어 여기저기 부탁해 보았지만 구입할 수 없었는데 문화재보호현장에 가서 겨우 얼마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와가 확보되니 기와 잇는 기술자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널리 수소문해 보았지만 전문기능공을 초빙하기가 아주 어렵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만일 국가에서 기와집 보존에 배려가 있으시다면 집집에 기와라도 배급해 주었으면 우선 급한 위험을 넘길 수 있겠다고 말한다. 비만 새지 않는다면 목재(木材)는 견딜 만 하니까 그 후의 사태는 두고두고 조금씩 보수(補修)하여도 좋으리라는 견해들이다.

어떤 집에서는 안채에 기와를 보충하기 위하여 문간채의 기와를 걷어다 쓰고 문간채에는 함석을 입혔다. 그 집의 주인도 기와만 공급하여 준다면 기와집들은 상당 수 보존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국가에서 그런 공급이 가능하다면 문화재관리국의 「기동보수단」과 같은 직제를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차적(年次的)으로 조금씩 시공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다. 응급 변화공사 만으로도 집의 수명은 상당기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엉 이을 짚의 공급이 있어야겠다고 한다. 통일벼계통의 개량종들의 짚의 줄기가 짧고 나약해서 옛날 지붕을 이었던 짚과는 다르다고 한다. 초가집 잇는 기능자는 아직 마을에 남아 있어서 그 점은 크게 우려될 바 없다고 한다.

## 6.

살림집 보존(保存)의 발의(發議)가 있는 지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2,332건의 자료가 수집되고 그중에서 1,348건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서도 체험한 바이지만 이들의 조사만으로 전국의 살림집 자료가 다 망라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좀더 넓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살림집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인 가치 때문이다.

살림집은 이 땅에 지어진 수많은 집들과 맥락을 잇고 있다. 수천년의 역사성을 이들이 지니고 있다. 특히 초가(草家)들은 원초적(原初的)인 성격을 잘 지니고 있어서 그 집이 지어진 것은 불과 100여년 전이지만 그 집에 표현되어 있는 법식(法式)이나 기법(技法)은 원초적인 양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원초적주가(原初的住家)를 규명하는데는 없을 수 없는 기본자료가 된다.

집은 풍토(風土)에 적응하면서 민족(民族)의 심성(心性)을 순화(醇化)하면서 인격도야(人格陶冶)의 요람이 되는 것이므로 자연적 인문적여건(自然的 人文的與件)을 잘 갖추고 있다. 민족의 지혜와 마음이 집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구조가 집의 평면구성(平面構成)이다.

평면구성(平面構成)은 지역적(地域的)이고 시대적(時代的)이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평면을 찾을 수 없는 대신에, 어떤 고자에서는 한 유형(類形)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런 분포(分布)의 상황에서 우리는 분포의 집중지역 분포의 한계지역, 다른 유형과의 공

전지역(共存地域)으로 나누어 살핀다. 이는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때로 옛 역사기(歷史期)의 강토(疆土)나 문화전파(文化傳播)등을 규명하는 자료로서도 주목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분포(分布)에 관한 정확한 학설(學說)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일이 마땅하느냐 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의 상태가 보존대상에 선정될 그런 것에는 미흡하다고 하여도 그 집이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넓게 집을 조사하여야 되는 소이연이 이런 점에 있다. 2차 3차로 계속되는 조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몇년을 두고 차근차근하게 조사하면서 학문적인 가치를 보고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사하고 그 자료를 보고하여 책으로 간행하는 일은 국가가 전문가에게 공부할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가 전국적으로 망라되었을 때 우리는 외국과의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집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선양(宣揚)할 수 있다. 세계 주택사(住宅史)에서 한옥이 차지할 위치를 이 때 비로서 우리는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료의 집대성은 국민에게도 유익하게 이용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옥을 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서 있다. 언제까지 양옥(洋屋)에만 살 수 없다면 이제부터 이 시대에 적합한 한옥을 구현하여야 된다. 그 구현을 위한 정보를 우리의 자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전국적인 치밀한 조사가 적극 이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